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
------------	----

제출년월일 : 2002. 5. 9.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들의 자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어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관내 거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청구인수의 기준이 매년 인구증감에 따른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적지않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감사청구인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관내 거주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1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인수의 기준을 “관내 거주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으로 개정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 나. 입법예고 : 2002. 4. 15 ~ 5. 4, 주민제출의견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 1이상” 을 “20세이상 주민 200명 이상”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u>20세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 1이상</u> 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u>20세이상 주민 200명 이상</u> -----